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56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정일영 · 권향엽 · 이훈기
손명수 · 송재봉 · 이용선
문금주 · 황명선 · 박선원
진성준 · 김종민 · 이춘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불공정 조달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u>제6호</u> 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때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⑥ ----- ----- <u>제7호</u> -----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